



특허청

보 도 자 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23.(목) 09:00	배포 일시	2022. 6. 23.(목) 08:30
담당 부서	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	책임자	과 장 윤기웅 (042-481-8321)
		담당자	사무관 한지성 (042-481-8243)

코로나19 백신·치료제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

- 백신, 치료제 우선심사 대상 (재지정으로 국내기업의 신속권리화 지원 -
- 백신 주권 확보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기대 -

-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국내 백신 및 치료제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·치료제 분야 특허출원을 6월 23일(목)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또는 코로나19 풍토병화엔데믹) 등에 대비하여 백신 주권·보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,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·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해당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한다.
 - 우선심사 대상은 ①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·치료제 관련 특허출원과 ②국내에서 코로나 19 백신·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·허가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출원이다.
- 특허청은 지난해 6월 23일 코로나19 등의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개선(특허법 등 개정)하여 코로나19 백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·공고한 바 있다.
 - * [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]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
 - 이번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백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재지정(2차)하고, 코로나19 치료제 분야는 새롭게 지정(1차)하여 우선심사를 지원한다.

□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정부 연구개발(R&D)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·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·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·허가를 진행중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**평균 2.3개월 만에 특허심사를** 받을 수 있어,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**전체평균 대비 약 10개월 단축**시킬 수 있다*.

* (평균 심사착수 기간) 우선심사 2.3개월 / 전체 12.2개월('21.12월 기준)

□ 이인실 특허청장은 “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으나, 백신·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역량은 보건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여전히 국산화가 필수적이다”라고 하면서,

○ “특허청은 백신주권 확보하여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·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.”고 말했다.

※ 붙임 : 재난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 지정 관련 공고문 1부. 끝.



특허청 공고 제2022-194호

「특허법」 제61조제3호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, 「실용신안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「특허·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5호다목에 따라 코로나19 백신·치료제 관련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우선심사신청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3일

특허청장

코로나19 백신·치료제 관련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지정

우선심사 대상	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	
	① 코로나19 백신·치료제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	②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·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코로나19 백신·치료제 생산기술과 관련된 출원 * 예) 임상 또는 허가 관련 절차 진행 중
신청가능한 기간	'22.6.23.~'23.6.22.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※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예정 ☞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1차 지정공고('21.6.23.~'22.6.22.)에 이은 2차 지정공고 이며,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1차 지정공고 임	
우선심사 신청료	특허출원 20만원 / 실용신안등록출원 10만원 ※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8호 및 제3조제7호	
제출할 서류 (입증할 내용)	○ 공통 제출서류 :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* *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5호다목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적은 설명서	
	○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 예) 협약서, 연구개발계획서 등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명시된 서류	○ 국내 생산(준비)여부 입증서류 예) 공장등록증명서, 위탁생산계약서 사본, 임상허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면 인정) 등